

「불법 외환거래 대응반」 중간 진행상황 점검

- 환치기·불법 해외송금 등 약 6,000억원 규모 이상의 불법 외환거래 사례 적발
- 관계기관은 대응반을 통한 협업을 강화하여 성과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

재정경제부는 '26.4.30일(목) 범정부 「불법 외환거래 대응반」 회의*를 개최하여 불법 외화반출 사례 적발 등 그간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.

* 참석 기관: 국가정보원, 국세청, 관세청, 금융감독원, 한국은행

먼저, 대응반은 본인 외 타인 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다수 발행하는 등 편법을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등 약 4,000억원 규모의 외화를 불법 해외송금한 소액해외송금업체를 적발해 무등록외국환업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. (☞ 사례①) 또한, 별도 등록 및 신고 절차 없이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중고차·부품 등 약 2,000억원 규모의 수출대금을 환치기 업자가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가상자산으로 수령하고, 수수료를 제외한 원화를 수출업체에 지급한 혐의로 환치기 업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, 무역대금을 수령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. (☞ 사례②) 이에 더해, 조세 회피 목적 등으로 고철 등의 수출 품목 단가를 8분의 1 수준으로 조작해 매출액 과소 신고 이후 차액은 차명계좌를 통한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. (☞ 사례③)

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소액해외송금업체 검사 결과 적발된 온라인 도박자금 등 불법 외화송금 혐의를 관세청에 공유하고, 관세청이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협업한 바 있다. 또한, 국세청은 고철 등의 수출액 과소 신고 후 차액을 불법 반입한 업체에 대해서 조세 포탈 여부를 조사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와 연계된 자금세탁·탈세 등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. 한편, 국가정보원은 해외와 연계된 범죄정보를 수집·지원하고 있으며, 재경부·한은은 관계기관 간 외환 정보 공유 및 기관별 조사과정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.

대응반은 금번 발표한 중간성과 외에도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. 참고로 동 대응반은 복잡·지능화되는 불법 외환거래 행위에 대한 범정부 공동 대응을 위해 1.15일(목) 출범한 바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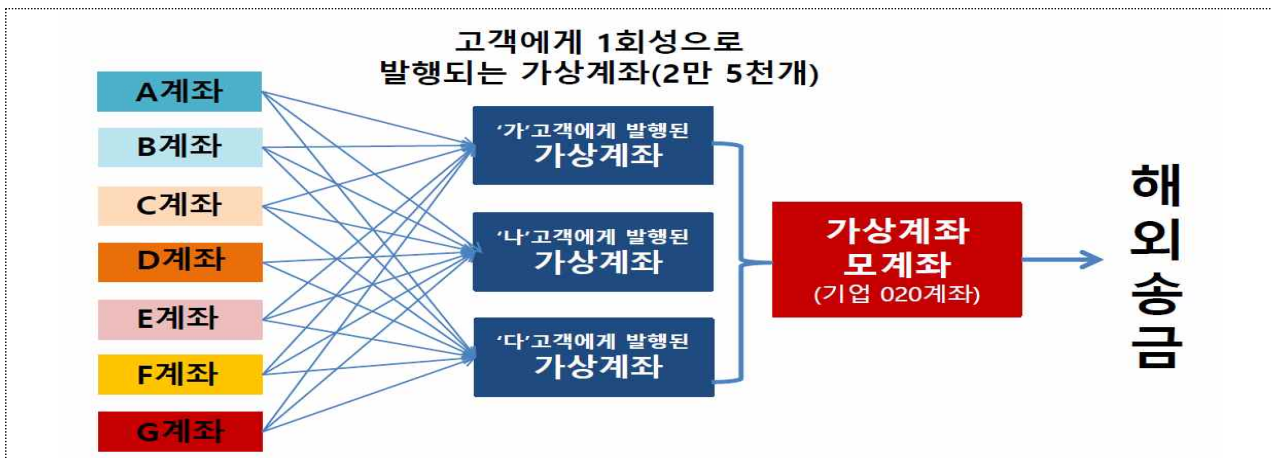
담당 부서 <총괄>	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	책임자	과 장	이희곤 (044-215-4750)
		담당자	사무관	류성열 (sung126126@korea.kr)
담당 부서	국세청 국제조사과	책임자	과 장	민희준 (044-204-3651)
		담당자	서기관	이규진 (lkj1203@nts.go.kr)
	관세청 외환조사과	책임자	과 장	조한진 (042-781-7930)
		담당자	사무관	박영작 (yjpark86@korea.kr)
	한국은행 외환심사팀	책임자	팀 장	임영진 (02-759-5734)
		담당자	과 장	신동건 (donggun@bok.or.kr)
	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	책임자	팀 장	박운규 (02-3145-7938)
		담당자	수석검사역	박윤정 (yoon217@fss.or.kr)



별첨

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적발 사례

① [사례①] 불법 자금세탁·외화반출 통로인 소액해외송금업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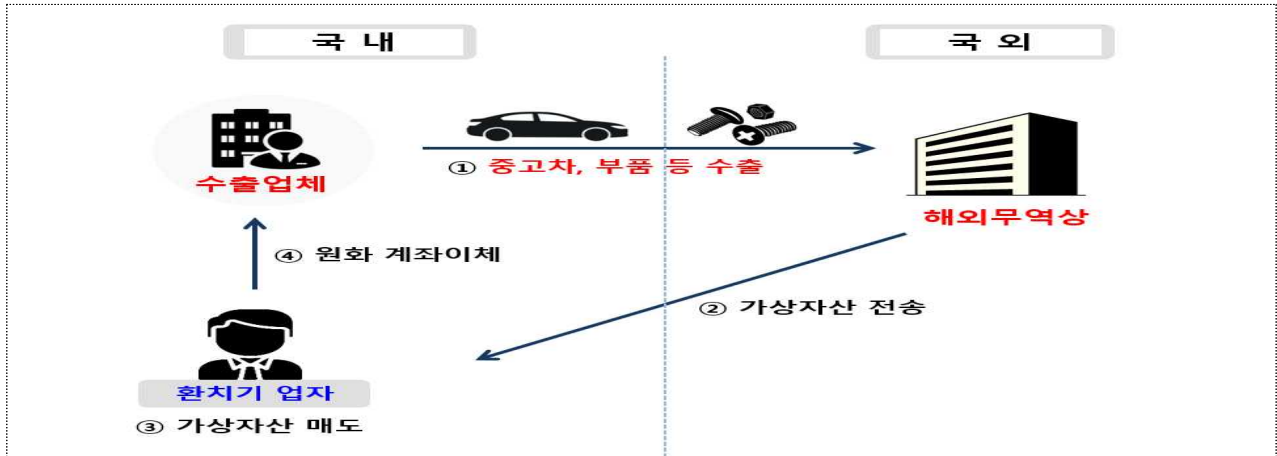


< 사실관계 >

※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범위를 교묘히 벗어난 영업방식으로 불법 외화유출

- ① 고객별(ID) 중복계정 생성, 타인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 무작위 발행 수법으로 동일인당 연간 누계한도 초과 송금
- ②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업무방식이 아닌 원화표시 선불지급수단 발행방식을 통해 동일인당 한도초과 송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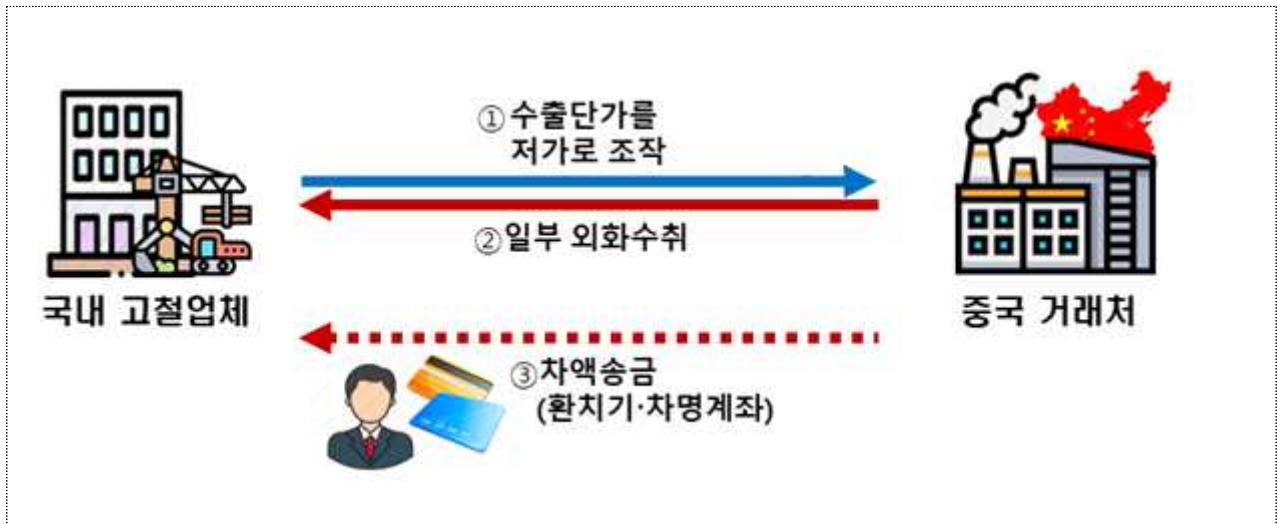
2 [사례②] 중고차 수출대금 환치기



< 사실관계 >

- ① 수출업체는 해외 무역상에게 중고차, 차량용 부품 등 수출
- ② 국외 무역상은 현지 은행송금 규제를 우회 등을 위해 환치기 업자를 물색하여 무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전송
- ③④ 환치기 업자는 전송받은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본인의 수수료 수익을 제외한 금액을 의뢰인이 지정한 수출업체 계좌로 이체

3 [사례③] 매출 과소신고 후 차액을 환치기로 반입



< 사실관계 >

- 국내 고철업체는 수출 가격을 저가로 조작하여 신고한 대금만큼만 정상적으로 국내 회수하고, 차액은 환치기 등을 통해 편법 반입

* 국내판매단가와 수출단가의 차이는 최대 약 8배